



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 개정 관련 인증검사 신청 안내

1. 귀 단체(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단은 항공법 제23조4항과 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7항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이 일부 개정(2016.04.08 국토교통부 승인)됨에 따라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첨부서류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안전성인증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귀 단체(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안내 1부. 끝.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수신자 (사)대한민국항공회, (사)한국파라모터협회, (사)한국모형항공협회, (사)한국열기구협회, (사)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국민생활체육회전국패러글라이딩연합회, (사)한국기구협회, (사)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 (사)한국드론협회,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사)한국드론산업협회

협조자

시행

접수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울곡동교통안전공단) / WWW.TS2020.KR

전화번호 054-459-7419 팩스번호 054-459-7393 / rich88@ts2020.kr / 대국민 공개

국민행복 정부3.0, 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가겠습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안내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업무 운영세칙이(2016.04.08 국토교통부 승인)개정 됨에 따라 안전성인증검사 신청 첨부서류 등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원활한 안전성인증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귀 단체(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전파하여 수검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안전성인증검사를 위한 신청 서식 및 첨부서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사업소개->초경량비행장치안전성 인증검사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지식센터->항공안전->초경량/경량 인증검사

- 안전성인증검사 신청서식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유선,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 관련 문의
전화번호 : 054)459-7397~99, 054)459-7417~18
팩스번호 : 054-459-7393
전자메일 : ksdnews@ts2020.kr